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교육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홍남기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납세자 권리 보호 및 과세행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·부채의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며, 화폐성외화자산·부채의 평가손익은 이를 헷지(hedge)하기 위한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6. ~ 1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외환(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)매매손익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·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)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~ 4. (생략) 5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. (생략) 나. <u>외환(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)매매손익</u>	제4조(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외환(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)매매손익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·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)</u>
5의2.·5의3. 삭제 6. ~ 8. (생략) ② ~ ⑧ (생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-4236